

살처분 범위 확대시 신중 기해야...



위생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전문수의사·학계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병원성 AI 지침사항, LPAI 백신시행, ND 살처분 보상과 효율성제고 방안 등 최근 질병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들을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시간을 가졌다.

현 고병원성 AI 행동지침(SOP) 효율성 논의

현행 시행되고 있는 SOP 규정에 의하면 AI가 발생하면 오염지역 500m내 살처분을 실시하고 3km까지 확대 살처분이 필요할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장이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가방역자문기구인 방역협의회를 거쳐 3km까지 확대실시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AI 발생이 7차에 걸쳐 지속되면서 인력 동원, 보상비용증가, 농가피해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계농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살처분 범위를 500m내로 줄이고 오염지역 내에서 백신정책을 도입하는 등 방역구역을 줄이는 대신 차단방역에 집중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원들은 외국과 국내사정의 차이를 두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확대하여 실시된 예방살처분 과정에서 추후 AI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농장들의 기록사항이 미비하여 역학조사가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지역을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한정할 경우 AI 차단병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신정책 또한 100% 완전 방어가 되지 못하고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살처분 정책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살처분 지역의 확대 여부 또한 발생상황을 고려해 방역협의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행 SOP규정이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앞선 6차례 발생 예에서 모두 3km를 살처분 한 것은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차기 발생시에는 SOP시행에 있어 AI발생으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기타의견으로 양계전문 수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역특구? 아직까지는...

특정지역에 원종계 사육농장이 밀집되어 있어 AI발생시 양계산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방역특구를 요청하였으나 위원들은 AI가 발생되더라도 농장들이 살처분 범위인 500m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계나 실용계 원종계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종계만을 대상으로 방역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법률적으로 개인의 사유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 양계농장 설립시 일정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은 했으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선중 위원장

저병원성 AI 백신 시판

저병원성 AI가 전국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필드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저병원성 AI 백신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 검역원에서는 저병원성 AI 백신사용을 허가하고 동물약품 5개 업체가 올해 시판을 앞두고 있다.

우선 현재 사용하는 LPAI 백신접종시 감시계를 의무화하여 변이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으 펼쳐야만 한다. 백신접종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사에 감시계 시행을 의무화하고 용역을 준 기관(학교)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변이주의 발생여부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가 ND 살처분보상 필요성 제기

ND는 법정 제1종 전염병이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살처분 보상규정이 없어 농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ND발생시 수의처방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전체보상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예외를 두어 일정기간 동안 살처분을 유예하거나 살처분에 따른 일부 보상 등 선택적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살처분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살처분 정책, 또는 백신비용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ND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ND 백신 효율성 제고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현재 ND 백신이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하며 농가가 직접 ND백신을 수령해서 접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에 백신을 지원할 경우 양계수의사를 통해 백신을 공급하며 관리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본 협회와 양계수의사회가 연계하여 정부의 양계수의사를 통한 ND 백신 공급 및 접종시행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양계질병 지속적인 연구 필요

위원들은 양계질병 근절을 위해 용역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HPAI 살처분 및 백신정책, ND 근절을 위한 방안, 백세미 문제해결 등 전문가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양계**